

(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-참조5)

2020. 10. 23.(금) 10:00

본 회 의 장

#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

성 남 시 의 회

#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

-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!  
그리고 선배·동료의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!  
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 입니다.
-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 
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 
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 
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-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 
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등  
18건의 안건에 대하여
-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 
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,  
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 
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.

○ 첫 번째,

“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”은  
담보력이 부족한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 및 자금지원을  
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 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 
하는 것으로  
“원안가결”하였으며,

○ 두 번째,

“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”은  
동물 학대행위 방지,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 
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「동물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의  
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 
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○ 세 번째,

“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”은  
농업농촌진흥기금에 2021년도 우리시 배정 기금을  
출연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 
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
“원안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네 번째,

“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”은

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 
있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 
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안 제4조(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) 제2항의 3호 다음에  
“제4호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 
하는 법인”을 추가로 신설하여  
“수정가결”하였으며,

○ 다섯 번째,

“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은  
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  
사업자 중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이 한시적 보증  
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 
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○ 여섯 번째,

“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”은
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 
제정(2020.05.01.)되어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  
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

- 안 제24조(가맹점의 등록 등) 제1항 중  
“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”를  
“시가 정하는 비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”로
- 안 제24조의2(가맹점의 자격) 제3호 중  
“「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를  
“「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”로
- 안 제24조의3(가맹점의 등록 거부) 제1호 중  
“제2조제1항”을 “제2조제1호”로 각각 수정하여

“수정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일곱 번째,

“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”은  
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  
지원을 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을  
출연코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 
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여  
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○ 여덟 번째,

“2021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”은  
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 
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 
얻고자 하는 것으로  
“원안가결”하였으며,

○ 아홉 번째,

“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”은  
민속공예전시관 사용중단 및 철회 시 기념부 사용료

의 개별 반환 사유,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열 번째,

“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”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 및 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여 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○ 열한 번째,

“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”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여 “원안가결”하였으며,

○ 열두 번째,

“2021년도 (사)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안”은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(사)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2021년 출연금 출연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열세 번째,

“2021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”은 관내 중소·벤처기업을 육성·지원하는 성남산업진흥원에 2021년도 출연금을 출연코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으며,

○ 열네 번째,

“성남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은 ‘회계관계공무원’의 제정 보증관련 규정이 「지방회계법」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

○ 열다섯 번째,

“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”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1년도 출연금 출연을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습니다.

○ 열여섯 번째,

“판교 크린넷(쓰레기 자동집하시설) 민간위탁 동의안”은 2021. 4. 15.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판교 크린넷을 민간위탁하고자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으며,

○ 열일곱 번째,

“성남시 판교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”도 성남시 판교 환경에너지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1. 4. 30. 만료되어 「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“원안가결”하였고,

○ 열여덟 번째,

“10년 공공임대주택’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 
‘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’ 촉구 결의안”은  
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  
가격에 상관없이 첫 주택구매에 따른 취득세 50%  
감면 대상으로 규정코자 촉구하는 것으로  
“채택”하였습니다.

○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

우리 위원회에서

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

보고한 “안” 대로

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,

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.

감사합니다.

**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 선 임**